2024.10 | Vol. 10
지방정부 정책&이슈

지방협의체 대정부·국회 건의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2024.10 | Vol. 10

지방협의체 대정부·국회 건의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Ⅰ. 문제의 제기

‘지방협의체’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도지사의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도의회의장의 협의체(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자치구청장의 협의체(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의 협의체(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을 의미하며, 이들 4개의 지방협의체를 통칭하여 ‘지방 4대 협의체’라 부른다. 또한, 이들 지방 4대 협의체는 그들 모두가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운영할 수 있으나, 아직 설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자치법」상 지방협의체의 설립 목적·취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장 간 상호 교류·협력 증진 및 공동문제 해결 등에 있으며, 그 수단으로서 행정안전부 및 관계 중앙부처에 대한 대국회 정책건의와 국회에 대한 대국회 입법건의를 규정하고 있다(제182조). 그러나 지방협의체의 대정부 정책건의 및 대국회 입법건의에 대한 정부·국회의 수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1] 특히, 대국회 입법건의의 경우에는 지방협의체 의견의 명확한 제출처 및 처리 과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부재하여, 각 지방협의체별로 제출한 의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협의체의 대정부 정책건의 및 대국회 입법건의는 모두 각 지방협의체별 구성원(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장) 간에 충분한 의견 수렴·조정을 거친 안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

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경우, 사무처를 개소한 2005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의 실시한 대정부 정책건의에 대한 중앙정부의 수용률이 약 40%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윤태웅, 2024).

나,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실질적 강제력·구속력이 부재한 탓에 중앙정부나 국회의 수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부의장이며 전국 시·도지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매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거 수직적 상하관계였던 국가-지방 간 관계가 최근 수평적 협력·대등관계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상징성과 역할 제고 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된 지방협의체의 대정부·국회 건의 절차 등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관계조항의 개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방협의체의 대정부 정책건의 및 대국회 입법건의의 실효성과 정부·국회의 수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방협의체가 정부·국회와 지방정부·지방의회 간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정책·입법적 소통·협력 창구(channel)이자 촉매제(catalyst)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감으로써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Ⅱ. 대정부·국회 건의에 관한 법적 현황 및 절차

1. 대정부 정책건의

현행 「지방자치법」 제182조에서는 지방협의체의 설립·신고, 구성원, 연합체 설립·신고 및 대정부 정책건의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정부 정책건의'에 관한 주요 내용(동조 제4항~제5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각 지방협의체(장)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 관련 각종 행정·재정적 개선 요구·건의사항을 제출하면, 행정안전부(장관)는 이를 관계 중앙부처(장관)에게 통보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부처(장관)는 2개월 이내에 검토 결과를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는 관계 중앙부처(장관)로부터 통보 받은 검토 결과를 즉

시 해당 지방협의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표 1〉 지방협의체 대정부 정책건의 관련 「지방자치법」 규정(§182)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의 의장
3.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② 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가 모두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를 설립한 때에는 그 협의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협의체나 연합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정책건의 추진과 관리를 위해 2019년 5월부터 '대정부 정책건의과제 처리 규정'을 제정 및 시행 중인데, 동 규정의 주요 내용과 실제 운영·관리 절차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윤태웅, 2024).[2)]

첫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의사결정 방식이 '합의제'에 의하고 있음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의 "모두 동의"를 전제로 개별 시·도로부터 각종 현안에 대한 대정부

2) 대정부 정책건의 안건 발굴 및 제출에 관한 내부 절차에 관해서는 지방협의체별 간 차이가 존재하나, 각 지방협의체별로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장으로부터 안건 제안·접수 및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다는 점은 지방 4대 협의체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대정부 정책건의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정책건의 안건을 접수 받아 '시·도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협의회 사무처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안건을 발굴하는 경우에도 이상의 절차를 따른다.

둘째, '시·도 의견조회' 결과, "모두 동의"로 확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로 확정하고, 그렇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안건을 제안한 시·도로 하여금 "조건부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시·도와 (재)협의 하도록 하여 "모두 동의"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로 최종 확정한다.[3)]

셋째, 최종적으로 조정·확정된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를 행정안전부로 공식 제출하면, 이를 접수받은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에 송부하여 2개월 이내에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해당 관계부처로부터 검토의견을 통보받는 즉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넷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해당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의 결과(관계부처 검토의견)를 통보받는 즉시 해당 시·도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이를 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종료한다.[4)]

3) 시·도 간에 최종적으로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을 제안한 시·도에 그 결과와 함께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로 선정되지 못하였음을 통보하고 종료한다.

4)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 가운데 관계부처로부터 '수용곤란', '장기검토', '미회신' 등의 결과를 통보받은 과제를 엄선하여, 내용의 적정성·시의성 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전국 17개 시·도 의견수렴 등과 같은 일련의 절차를 다시 거쳐 대정부 정책건의를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윤태웅, 2024).

〈그림 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정책건의 진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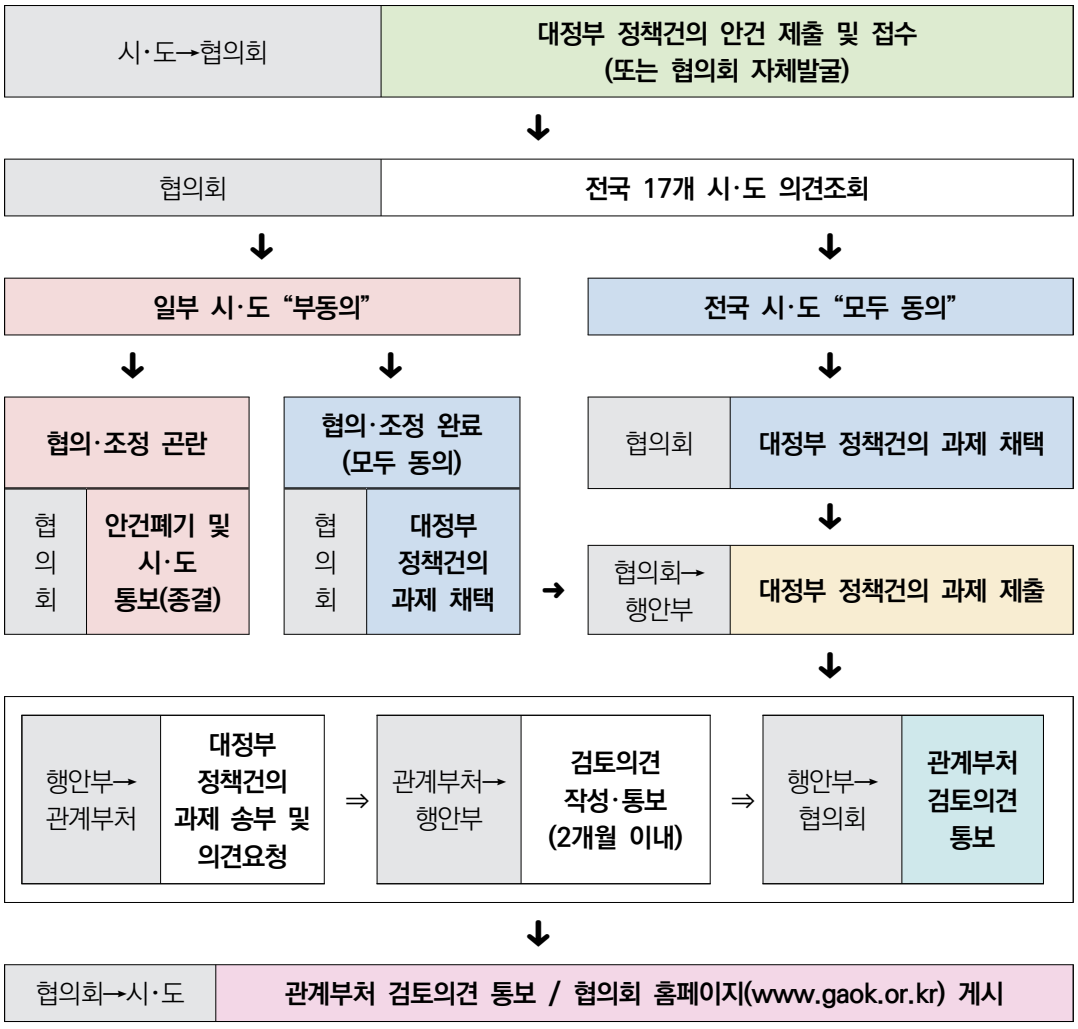

자료 : 윤태웅(2024).

2. 대국회 입법건의

현행 「지방자치법」 제182조제6조에서는 지방협의체의 '대국회 입법건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지방협의체로 하여금 지방자치 관련 법률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의견을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협의체는 해당 구성원(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장)으로부터 제안된 안건이나 사무처에서 자체 발굴·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구성원 간 충분한 의견 수렴·조정을 거친 뒤 안건의 분야 및 경중에 따라 국회의

장,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전문위원, 국회사무처 등에 공문(서면)의 형식으로 제출하고 있다.[5)]

〈표 2〉 지방협의체 대국회 입법건의 관련 「지방자치법」 규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⑤ (생 략) **⑥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⑦ (생 략)

Ⅲ. 대정부·국회 건의 개선을 위한 입법 제안

1.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

현재 「지방자치법」 제182조에서는 1개의 조(條)에 △지방협의체나 연합체의 설립·구성 및 신고(제1항~제3항 및 제7항), △지방협의체나 연합체의 대정부 정책건의(제4항~제5항), △지방협의체나 연합체의 대국회 입법건의(제6항) 등을 모두 포괄하여 담고 있으며, 해당 항(項)별 내용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대정부 정책건의 및 대국회 입법건의와 관련된 규정은 지방협의체의 존립 근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형식적인 내용으로 규정되어,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82조를 그 내용에 따라 △제182조(지방협의체나 연합체의 설립·구성 및 신고), △제182조의2(지방협의체나 연합체의 대정부 정책건의), △제182조의3(지방협의체나 연합체의 대국회 입법건의) 등 3개의 조(條)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정부 정책건의(제182조의2) 및 대국회 입법건의(제182조의3)의 실효성과 정부·국회 수용률 제고 등을 위해, 지방협의체나 연합체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입법 건의활동에 관한 내용을 추가·보완하며, 그 일환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방안(제103조의2 신설)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

5) 지방협의체에서는 '대국회 입법건의'와 관련하여, 국회에 서면(공문)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 외에, 각 지방협의체별 회장단·임원단 등이 국회의장·부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 등을 직접 만나 건의하기도 하나, 이는 법령상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닌 비공식적 활동에 해당하므로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2.「지방자치법」개정 방안

1) 지방협의체 또는 연합체 설립 관련 '제182조' 개정

현행 「지방자치법」 제182조에서 △지방협의체의 목적·설립(제1항), △지방협의체 연합체의 설립(제2항), △지방협의체나 연합체의 설립 신고(제3항), △지방협의체나 연합체의 설립 신고 및 운영 등에 관한 대통령령 위임(제7항) 등은 모두 지방협의체 또는 연합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개정을 통해 '제182조'에는 현행 제182조의 제1항~제3항(개정안 제1항~제3항) 및 제7항(개정안 제4항)만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협의체·연합체 설립) 개정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의장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의 의장 3. 시장·군수 및 구청장 4.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는 그들 모두가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그 협의체·연합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 제〉**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해당 협의체나 연합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⑤ **〈삭 제〉**

현 행	개정안
내용을 밝혀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삭 제〉** 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대정부 정책건의 관련 '제182조의2' 신설

현행 「지방자치법」 제182조의 제4항~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협의체나 연합체의 대정부 정책건의 관련 내용은 △건의 대상 범위를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으로 제약하고 있는 점, △건의 절차·과정 상 행정안전부를 단순 경유하도록 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점, △안건을 제출한 지방협의체나 연합체의 관계부처 검토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나 재검토 요청 권한이 없는 점, △관계부처의 수용 노력·의지를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점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현재의 '중앙정부 수용률 저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제182조의2(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의견 제출 등)'를 신설하여 △대정부 정책건의 대상 범위를 '지방자치 등'으로 확대하고(개정안 제1항), △지방협의체나 연합체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직접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며(개정안 제1항),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검토 결과를 해당 지방협의체나 연합체에 직접 알리도록(개정안 제2항~제3항)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검토 결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개정안 제4항),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개정안 제4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심과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정부 정책건의에 관한 일련의 과정·절차 및 내용을 공개하도록(개정안 제5항)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지방자치법」 제182조의2(대정부 정책건의) 신설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182조의2(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의견 제출 등) ① 제182조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이하 "협의체등"이라 한다)는 지방자치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한 협의체등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 또는 통보한 협의체등이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협의체등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결과를 받은 협의체등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 및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밝혀 의견을 제출 또는 통보한 해당 협의체등이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협의체등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의 의견 제출, 통보, 검토, 조정 및 결과 등에 관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한편, 지방협의체나 연합체의 대정부 정책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기관(안건 제안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및 지방협의체·연합체)의 수용도와 중앙정부의 수용률을 함께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책건의 시 당사자(안건 제안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나 지방협의체·연합체 관계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자) 간 대면회의 개최나 추가자

료 요청·제출 등이 보장되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를 통한 이의 제기나 재검토 요청 사항의 조정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제103조의2'를 신설하여, 대정부 정책건의 시 △지방협의체나 연합체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개정안 제1항), △이의 제기에 따른 조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관계 지방협의체나 연합체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도록(개정안 제2항~제3항) 해야 할 것이다.

〈표 5〉「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의2 신설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03조(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 신고) ①~⑤ (생 략)	제103조(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 신고) ①~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3조의2(협의체등의 이의 조정 등)** **① 법(개정안) 제182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한 협의체등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등을 직접 제출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개정안) 제182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를 조정하기 위하여 이의가 제기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해당 협의체등 관계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협의체등에 즉시 알려야 하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정책 및 관계 법령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3) 대국회 입법건의 관련 '제182조의3' 신설

현행 「지방자치법」 제182조의 제6항에 규정된 지방협의체나 연합체의 대국회 입법건의 관련 내용은 △건의 대상 범위를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로 제약하고 있는 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출처(국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위원장), 국회사무처 등)

가 명확하지 않은 점, △국회 차원의 검토 결과에 대한 통보나 이의제기 등이 규정되지 않은 점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제182조의3(국회에 대한 의견 제출)'을 신설하여 △대국회 입법건의 대상 범위를 '지방자치 등'으로 확대하고(개정안 제1항), △지방협의체나 연합체로 하여금 제출안건에 대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설명하도록 요청(개정안 제2항)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 대한 참석'을 전제로 하므로, 지방협의체나 연합체 입장에서 대국회 입법건의 안건의 제출처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로 특정되는 효과와 상임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따른 국회 차원의 검토 결과가 간접적으로 공개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표 6〉「지방자치법」 제182조의3(대국회 입법건의) 신설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182조의3(국회에 대한 의견 제출) ① 협의체등은 지방과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위원회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협의체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의견과 관련하여 해당 국회 소관 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향후 추진계획

'대정부 정책건의'와 '대국회 입법건의'는 모두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지방협의체의 법적 기능에 해당하나, 매우 형식적이고 불분명한 규정으로 인해 중앙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는 단순 선택사항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해당 건의 안건이 지방협의체별 구성원 간 충분한 협의나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앙부처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서는 이를 수용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6)]

6)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2005년 4월~2023년 11월 동안 실시한 총 583건의 대정부 정책건의 결과, 전체의 약 60%에 해당하는 348건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불수용(188건, 32.2%), 장기검토(141건, 24.2%), 미회신(19건, 3.3%)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는 대정부 정책건의 및 대국회 입법건의의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7]을 마련한 바, 입법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를 비롯한 관계부처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관계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및 반영하여 개정안을 확정한 후, 대통령이 의장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결을 거침으로써 입법의 추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지방협의체의 대정부·국회 건의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은 제안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또는 지방협의체)과 검토기관(관계 중앙부처 또는 국회) 모두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 그리고 국가 전체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있어, 상호간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것이 취지이자 목적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 중앙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관심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본 원고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방안의 내용들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도하여 타 지방협의체에 대한 수차례 의견 수렴 및 반영에 따른 결과이다.

참고문헌

윤태웅. (2024).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정책건의 개선 방향. 〈지방정부 정책&이슈〉. Vol.6.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2024.10 | Vol. 10
지방정부 정책&이슈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검토와 대학경쟁력 제고 방향

이우정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

2024.10 | Vol. 10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검토와 대학경쟁력 제고 방향

이우정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

I. 들어가며

지난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하 IMD)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전체 67개국 중 20위로 2021년 23위, 2022년 27위, 2023년 28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반등하였다. IMD는 국가경쟁력 평가할 때 핵심매력지표(key attractiveness indicator)를 설문조사로 파악하는데 1위가 '높은 교육수준', 4위가 '숙련된 인력', 5위가 '경쟁력 있는 R&D 문화'로 나타났다(IMD, 2024). 즉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가장 경쟁력 있는 상위 5개 요인 중 3개가 고등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고등교육이 우리나라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요인임을 알 수 있다(서재영, 2024). 그러나 고등교육 경쟁력을 나타내는 대학 교육(University Education) 부문은 46위로 국가경쟁력이나 교육경쟁력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19년에 55위를 기록한 이후 46위에서 49위 사이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경쟁력 순위나 교육경쟁력('24년 기준 19위)에 비해 한참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IMD 국가경쟁력 지표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비판이 있고(고길곤·박세나, 2012), 국가의 교육경쟁력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낮은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그림 1〉 한국의 국가·교육 및 대학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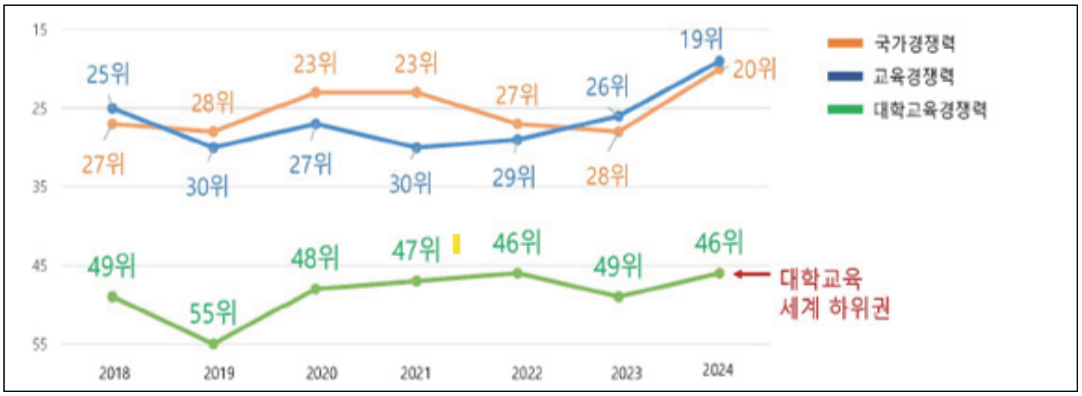

자료: IMD(2024)

2024년 기준으로 국내 대학들의 세계 대학 순위를 보면, QS 세계대학순위 발표 결과 100위권 내 한국대학은 5곳(서울대, KAIST, 연세대, 고려대, 포스텍)이었으며 THE 세계대학랭킹에 따르면 100위권 내에 2곳(서울대, KAIST)이 포함되었다. US뉴스&월드레포트가 발표한 세계 대학 순위에서 100위권 내에 한국대학은 없었으며 서울대가 135위를 기록하였다.

최근 고등교육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 고등교육 팽창에 따른 이수자의 성격 변화 등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21). 특히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의 학생충원을 어렵게 하고, 이는 지방 대학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 실제 2024년도 비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7.1%였으나 수도권은 99.5%의 충원율을 보였다[1]. 한국개발연구원(2023)에 의하면 대학 정원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2040년 수도권 대학 충원율이 60~80%, 비수도권 대학의 충원율은 27~43.5% 수준으로 전망하였다.

고등교육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주체일 뿐 아니라 미래의 빠른 기술변화와 노동시장 변화에 적응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학이 위치한 지역내에서 사회·문화적으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지역경제 발전 측면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83번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85번

1) 대전일보(2024.10.9.) "RISE, 글로컬에도 지역대학 한계여전... 지원 강화 필요"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작년부터 ‘글로컬대학30’,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RISE체계)’, ‘전공자율선택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글로컬대학30’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학 육성을 표방하고 있는 정책으로 고등교육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된 RISE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교육부, 2023).

본 글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황을 대학경쟁력 분석과 재정지원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대학의 의의를 논의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 정책인 ‘RISE체계’와 ‘글로컬대학30’에 대한 검토를 통해 두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서술한다.

Ⅱ. 대학경쟁력 개념·진단 및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1. 대학경쟁력 개념

대학의 경쟁력은 관점에 따라, 판단하는 주체에 따라 그 정의가 차이가 있다. 우선, 미시적 관점에서 개별 대학 간의 경쟁에서 한 대학의 경쟁력은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다른 대학들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의미한다.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경쟁력의 한 요소로서 국가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능력이다(심건길, 2005). 대학경쟁력은 정부와 대학의 입장에 따라서도 이해가 매우 다르다(염민호, 2023). 대학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인에 대학의 역할이 포함되는데 대표적으로 교육, 연구, 사회공헌이 있다(염민호, 2023). 정부는 교육 부문에서 충원률, 취업률을 중시하지만 대학은 학위과정 그 자체를 중시한다. 연구 부문에서는 정부는 논문이나 저서, 특허 숫자 등을 중히사고 대학(특히 교수)는 양적지표로 연구 결과의 질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다. 사회공헌 영역은 정부는 산학협력을 중시하는데 이 과정과 결과가 지역발전, 국가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학은 교육과 연구에 충실함으로써 그 결과 사회공헌(사회민주화, 산학협력, 지역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염민호, 2023).

〈표 1〉 대학(고등교육) 경쟁력의 개념과 실체

구분	교육	연구	사회공헌	성과관리	특징
정부	- 충원률 - 취업률	- 연구논문/책/특허 숫자 - 연구비 수주액	- 산학협력	- 수/양의지표	- 단순
대학	-학위과정 목적	- 품질 중심	- 자발적 참여	- 과정중심 - 동료 평가	- 종합

자료: 염민호(2023)

해외[2]에서 대학경쟁력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보면 IMD는 대학경쟁력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소로, 기업이나 사회에 대한 대학의 기여도로 정의하였다(김성현, 2024). 반면 THE, QS는 대학 경쟁력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았지만 연구의 질, 졸업생의 취업률, 국제화, 교육의 질 등을 통해 대학 순위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아 '교육과 연구의 질'을 대학경쟁력으로 보고 있다(신현석 외, 2008).

〈표 2〉 기관별 평가 지표 구성

구분	평가지표
THE	교육(평판도 조사, 교원 및 학생비율, 박사 및 학사비율, 박사학위취측자 및 교원비율, 대학수입), 연구(평판도조사, 연구수입, 연구생산성), 피인용(연구영향력), 국제적 관점(유학생비율, 외국인교원비율, 국제협력), 산업체관련수입(지식이전)
QS	학문적 평판도, 교수당피인용 횟수, 고용주 평판도, 학부생 수, 유학생 수, 외국인교원, 국제연구네트워크, 고용성과, 지속가능성
US News & World Report	글로벌연구평판도, 지역연구평판도, 출판물, 도서, 학회, 정규화된 인용 영향력, 총피인용횟수, 인용상위10%속하는 논문수, 국제협력 국가별 비율, 국제협력 등

자료: Elsevier(2024)

또한 국내에서는 중앙일보에서 매년 대학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학을 4개부문 33개 성과자료를 토대로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고 있다. 4개 부문은 교수연구(95점), 교육여건(95점), 학생교육(80점), 평판도(30점)이며 지표 33개를 확인하면 연구비와 장학금, 진학률 및 성과에 더불어 평판도까지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다(김성현, 2024).

2) 대학 순위 평가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보고서는 CWTS라이덴랭킹, 상하이랭킹(ARWU), THE 세계대학순위, THE세계대학영향력순위, QS세계대학순위, 전공별QS세계대학순위, US 뉴스&월드리포트:베스트대학순위이다(출처: https://www.elsevier.com/ko-kr/academic-and-government/university-rankings-guide 2024.10.1. 검색).

2. 대학경쟁력 현황 및 의미

세계 대학을 평가해서 발표하는 THE와 QS 등에서 발표한 국내 대학의 순위는 아래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THE 세계대학랭킹과 QS 세계대학랭킹에 따르면 500위권내에 국내 대학은 각각 총13곳이며, 국립대학법인(서울대)을 제외한 국립대학은 없으며 수도권(서울)의 사립대가 7곳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비수도권의 경우 순위에 들어간 대학은 모두 과학기술대학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세계 대학순위평가의 한국 순위 현황(2024~2025)

순위	THE		QS		ARWU		US News	
	대학수	학교명	대학수	학교명	대학수	학교명	대학수	학교명
1~100	2	서울대(62) KAIST(82)	5	서울대(31) KAIST(53) 연세대(56) 고려대(67) POSTECH(98)	1	서울대(86)	-	
101~200	4	성균관대,연세대, POSTECH (151), 고려대(189)	2	성균관대, 한양대	1	성균관대	1	서울대
201~300	4	세종대,한양대, 경희대,UNIST	1	UNIST	4	KAIST,고려대, UNIST,연세대	3	세종대, 성균관대, KAIST
301~400	1	DGIST	5	경희대,세종대, 중앙대,DGIST, GIST	2	한양대, POSTECH,	3	고려대, POSTECH, UNIST
401~500	2	GIST,중앙대			3	경희대,부산대, 경북대	1	한양대
계	13		13		11		8	

자료: 타임즈(www.timeshighereducation.com), QS세계대학순위(www.topuniversities.com), US 뉴스&월드리포트:베스트대학순위(www.usnews.com), 상하이랭킹(www.shanghairanking.com)

각 기관에서 발표한 대학 순위 결과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몇 가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로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중된 종합사립대 중심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THE와 QS 세계대학랭킹에서 500위권에 포함된 13개 대학 중 8개 종합대학은 모두 서울 소재 대학이고, 종합대학 중 서울대를 제외한 7개 대학이 사립대학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학은 대학별 특성, 즉 다양성이나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부 중심의 4년제 종합대학, 특히 수험생 부모의 기존 4년제 명문대를 선호하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학의 서열이 전공 단위 서열보다 우선시되고 있고, 이는 학문분야별 평가에서 특별한 경쟁력을 가진 대학이 없다는 것이다. 즉, 학문분야별 특성화대 정책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이나 역량평가 등 대학에 대한 평가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대학이 다양성을 가질 수 없게 된 것이다. 둘째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500위권 내에 속한 대학은 과학기술대와 포스텍과 같이 소규모 대학이다. 이들 학교의 경우 학부생 규모가 작은데, 이를테면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년 고등교육기관 입학정원 정보에 따르면 KAIST는 940여명, DGIST는 220명, GIST는 200명, UNIST는 370명, 포스텍은 320명이다. 이들 과학기술대학의 총입학정원은 2,050명이다. 서울대 이공계 입학생 1,495명, 고려대 이공계 입학생 1,667명, 연세대 이공계 입학정원 1,310명[3]인 것과 비교하면 서울 주요대학 이공계 입학생 평균의 1.3배 수준이다.

3. 대학경쟁력 진단과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보통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은 대학에 대한 재정투자라고 말한다. 적절한 수준의 재정투자를 통해 교육이나 연구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연구나 학습여건이 높아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이 성균관대학교를 인수하면서 삼성에서 성균관대학교에 재정을 투입하였고, 그에 따라 대학의 순위가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중앙일보, 2023.11.20.). 1996년에 삼성이 성균관대를 인수한 후 연구와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성균관대학은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1997년 11위였지만, 2013년 3위에 오른 뒤 19년 2위, 2024년 3위를 기록하는 등 최고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성균관대학의 자체 연구비 지원액은 327억원으로 평가 대학 53개교 평균(84억 원)보다 약 4배 많은 수준이다.

정부가 부담하는 공공재원 투입액에 따라 대학경쟁력이 달라진다. 앞서 언급한 IM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경쟁력은 67개국 중 46위로 하위권에 해당한다.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수준이 낮다는 근거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소득수준에 비해 낮은 편이다(김진영 2022). 2020년 기준으로 실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대비

3) 각 학교의 본교 기준 입학정원임

고등교육 지출 비중은 2.4%로 OECD 평균인 2.7%에 미치지 못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23).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정부의 실질고등교육예산(고등교육예산 중 학자금지원 사업비 제외)은 15.5조 원으로 GDP대비 0.71% 수준이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교육예산 중 실질고등교육예산의 비중은 2016년도 17.9%에서 2023년도에 15.2%로 오히려 감소했다.

〈표 4〉 전체 교육예산 중 실질 고등교육예산 비중

구분	2016년도	2023년도	증감
교육예산	53.2조원 (100%)	102조원(100%)	+48.8조원
고등교육예산	11.1조원 (20.8%)	20.5조원(20.1%)	+15.5조원 (-.0.7%p)
실질고등교육예산	9.5조원 (17.9%)	15.5조원(15.2%)	+6조원 (-2.7%p)

자료: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2024)

우리나라 고등교육예산 규모를 교육부와 타부처 그리고 지자체별로 보면 아래 〈표 5〉와 같다. 2023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약 20.5조 원을 대학에 지원했고, 교육부가 전체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고 과학기술부 등 타부처는 전체 예산의 27%이다.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경우 대학혁신지원사업, 4단계 BK21사업, LINC3.0사업, RIS사업,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과 같이 교육, 연구, 산학협력, 지역혁신, 국립대학육성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6〉과 같이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경우, '20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의 67.5% 수준이다. 그 중 정부가 부담하는 공공재원의 규모는 OECD 평균의 43.5% 수준이다.

〈표 5〉 우리나라 정부의 고등교육예산 규모(교육부, 타부처, 지자체 포함)

(단위: 억 원)

년도	고등교육합계	교육부	타부처	지방정부
2021	170,381	118,995	46,979	4,407
2022	187,458	126,915	55,634	4,909
2023	204,859	144,238	55,634	4,987

자료: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2024) 재인용

〈표 6〉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OCED 평균과 비교('20년 기준)

(단위: 달러)

구분	한국	OECD 평균
학생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총액	12,225	18,105
공공재원 규모	5,289	12,154

주: 각각의 금액은 구매력평가지수를 반영한 ppp달러를 의미함.
자료: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2024) 재인용

〈그림 2〉에서와 같이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보면,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약 1만4천 달러, 1만9천 달러로 OECD 평균을 상회한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경우 1만3천 달러로 OECD 평균인 약2만 달러의 66% 수준이다.

중앙정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에 대해 다양하게 지원해 왔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재정지원 방식은 지역발전이나 성장을 견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림 2〉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교('21년 기준)

(단위: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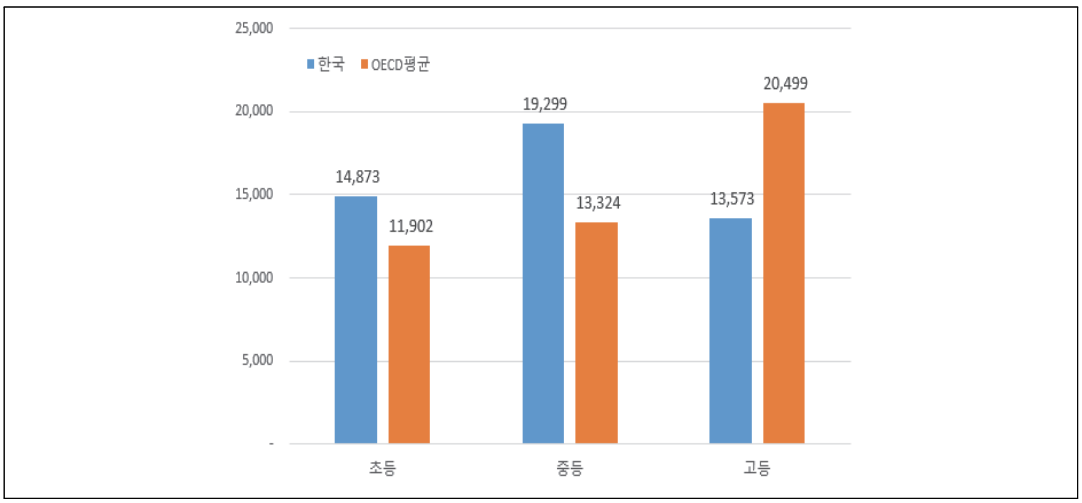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2024)

Ⅲ. (지역)대학과 국가·지역발전

대학은 대학이 위치한 지역 내 사회적·문화적 구심점 역할을 하며, 지역경제 발전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한다. 특히 낙후된 지역 내 대학은 대학의 기본 의무인 교육, 연구, 봉사 외에도 지역의 발전과 혁신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기 위해 노력한다(장후은·이종호, 2017).

산업연구원(2017)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인구와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했는데, 지역에 건실한 대학이 소재하여 지역의 인재가 지역대학으로 진학하고 지역 내 기업에서 일자리를 얻게 된다면 인구와 일자리를 동시에 유지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최경희·임효숙, 2022).

지역경제와 지역인구 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지역의 대학은 매우 특수하다. 한국은행(2019)에 따르면 강릉지역 대학생의 소비지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내 소득 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연간 1,000억에서 1,160억 원으로 강릉 지역총생산(GRDP)의 2.1~2.4%를 차지한다. 강릉시 전체 예산(1조 1천억 원)의 9~10%수준이다. 고용창출 규모는 약 3,500명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행(2023)은 대학 폐교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추정하였다. 대학 폐교로 20대 인구가 줄어들어도 지역내 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대학 폐교로 20대를 비롯한 청년 인구의 유입이 감소하면 서비스업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경제와 문화적 발전을 위해서 대학의 역할은 중요하며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의 기여도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대학-기업 간 협업에 관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낙후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이 협업하는 사례가 많다(최경희·조동성, 2023). 김영철(2013)은 지역사회와 대학의 협력에 지자체까지 포함된 확대된 협력체계가 지역의 발전과 도시재생에 공생적 관계에 따른 성공적 모델이 구축된다고 강조했다. 장후은·이종호(2017)는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 초기 단계에는 대학이 기술이전이나 상업화 등 기업가적 대학의 역할이 요구되지만 최근 대학-기업-정부 혹은 지역사회 간 혁신시스템에서 주요한 제도적 주체로 역할이 전환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사실, 지방대학의 위기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2021년 이후에야 찾아볼 수 있으며,

소수에 불과하다(이민철 외, 2023). 권호혁 외(2021)는 지방대학의 폐교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는 서울·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과 중앙정부의 대학 정책 실패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 김재훈(2021)은 중소도시의 관점에서 지방대학의 위기 문제를 살펴보면서 중소도시에 대한 인식의 전환 필요성과 이들 지역에 있는 대학의 현실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안하였다. 이길재 외(2021)는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과 지방대학육성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간의 격차를 더욱 고조시킨다고 지적하며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 방안으로 지자체-대학 연계의 거버넌스 구축, 권역별 대입정원 쿼터제, 지역대학 기능 분화, 대학과 산업계 간의 공동 고등교육체제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 외에 대학 정책과 관련된 많은 토론회를 통해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재정 지원 확대와 대학 평가체계 변화, 등록금 자율화 등을 제안한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2023)은 지방 대학에 대한 지원 정책을 청년층의 지방정주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보았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논쟁적이다. 대학졸업자의 긍정적 외부 경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들의 지방 취업과 정주를 위한 정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실제 대졸 청년층의 높은 지리적 이동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정책의 목표 달성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지역대학이 지역에서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대학은 기존의 교육, 연구 및 사회봉사 등 전통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지역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 조성 및 운영에 기여하는 등 지역 경제 영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제 지역사회 구성원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까지 기대받고 있다(이태근 외, 2011). 지역이 성장하기 위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산업계에서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활동을 통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역산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대학에서 양성하고 이렇게 양성된 인력이 지역산업체에 취업하여 지역에 정주함으로써 지역이 성장할 수 있다. 이상적인 지역 발전은 해당 지역의 산업체나 교육기관을 비롯한 인적·물적 자원과 고유한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달성된다.

Ⅳ. 윤석열 정부의 대학 정책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윤석열 정부는 지역혁신과 발전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역 대학 육성을 목표로 RISE와 글로컬대학30 등 정책을 도입, 추진하고 있다.

RISE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과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기존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의 50%(2조 원 이상)를 지역 주도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RISE를 통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위해 작년 3월 7개 시범운영 지역을 발표하였다. 선정 지역은 부산, 대구,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다. 2023년도에 선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올해 기반조성을 거쳐 2025년 전 지역의 RISE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5월 기준으로 교육부는 각 지역의 RISE를 이끌어갈 추진체계 구축은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개 모든 시·도에서 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지정을 완료했으며 지역의 RISE센터는 15개 시·도에서 지정이 완료되었고 남은 2개 시·도도 협의를 거쳐 지정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든 시·도는 RISE체계 5개년(2025~2029) 계획 시안을 수립하여 올해 초 교육부에 제출했다.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의 비전,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의 특성과 정책 수요, 지역대학의 강점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과제로 구성된다. 올 연말 최종 확정을 목표로 보완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각 시·도가 제출한 5개년 계획 시안에 대하여 전문가 컨설팅과 함께 시·도별 자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계획 시안의 현장적합성과 과제간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자문 이후 교육부는 각 시·도, 중앙·지역라이즈센터, 지역대학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4].

4) 대학지성 in&out(2024.5.8.).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내년 전국 시행...교육부, 준비 박차'

2. 글로컬대학30[5)]

교육부는 2023년 4월 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함께 특히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RISE 이외에 글로컬대학30 정책을 발표했다(교육부, 2023). 글로컬대학30 사업의 부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 K대학을 향한 담대한 혁신'이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최정예 선도 대학을 육성해 각 지역마다 혁신 '허브(hub)'로 정착시킨다는 전략이다. 이 정책은 국가와 지역, 대학경쟁력의 동반 상승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학과간, 대학-지역-산업 간, 국내·외 간 벽허물기와 대학-지방정부-지역산업계의 파트너십 구축, 대학-지역 글로벌 수준의 동반성장 모델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대학재정지원에 대한 계획은 대학의 자율적 혁신 추진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의 하향식 계획에서 지방정부 등 파트너십 기반의 상향식 혁신 체계로 전환하고 대학의 전면적 체질 개선을 위해 소수 사업단 중심의 프로그램 기반 지원 방식에서 대학 단위의 전략적 지원 방식을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사업별로 예산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칸막이형 예산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하였다. 대학의 과감한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혁하여 대학이 혁신에 집중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지방대학과의 상생을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림 3〉 글로컬대학30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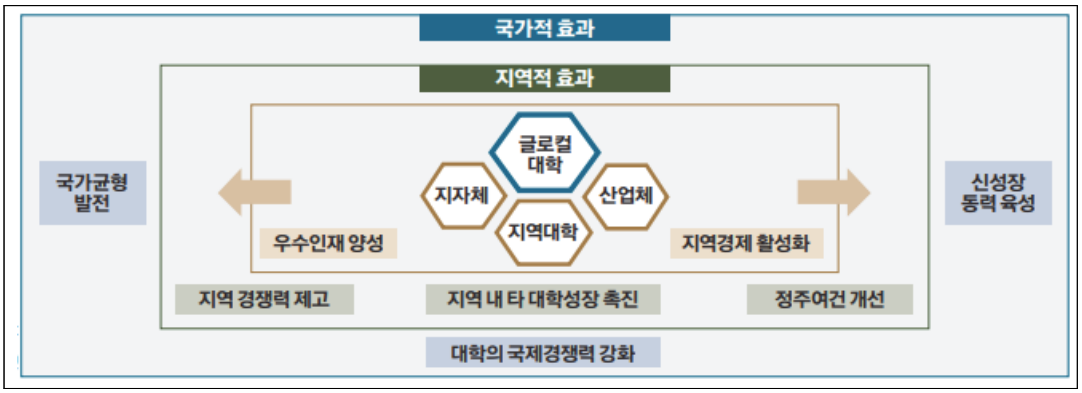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2023),

5) 교육부 보도자료(2023.4)와 채윤정(2023)을 참고하여 작성함

대학혁신 추진전략을 '지원전략혁신'과 '대학 구조 및 운영 혁신'으로 구분하였다. 지역별로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역량을 가진 대학을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을 지정·운영을 통해 대학이 원하는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정지원의 경우 글로컬대학 1개 대학당 5년 간 약 1,000억 원을 대학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부처에서 대학재정지원 사업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산업계의 우수인력을 글로컬대학 교원으로 파견하여 산업계 맞춤형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산학협력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산업계의 협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글로컬대학30의 '대학 내부 구조와 운영의 혁신'은 대학이 지역혁신을 위한 산학협력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과 사회 수요를 고려하여 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대학의 안팎, 대학 내부의 경계를 허물어 유연한 운영을 통해 대학 외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대학 거버넌스 개방을 추진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학과와 학과, 대학과 대학 또는 대학과 산업체에 공동 소속으로 교원을 임용하는 JA(Joint Appointment) 교원제도, 교원승진 및 인센티브 재설계, 무(無)학과 제도, 융합전공, 자기주도설계 전공 등이다.

글로컬대학30은 선도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장기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체계를 마련하여 5년 동안의 지원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혁신과 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글로컬대학30은 대학 내·외부의 혁신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대학과 지역 동반 성장을 위한 모델을 만들어 새로운 대학지원의 패러다임을 형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6].

3. RISE와 글로컬대학30의 기대

지난 정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해 왔다.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지방대학 정책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대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컬대학30'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학 육성을 표방하고 있는 정책으로 고등교육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된 RISE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되

6) 글로컬대학의 비전과 목표는 마지막의 〈부록 1〉, 지역별 글로컬대학 지정 현황은 〈부록 2〉 참고

어 있다.

RISE 시행을 통해 지역 대학은 지역 특성에 부합한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학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역내 대학들과 협업을 통해 지역의 많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정부, 대학, 산업체 간의 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글로컬대학30은 지역의 산업과 사회 연계 특화 분야에 대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육성하여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3년 11월과 2024년 7월에 각각 본지정대학 10건씩 총 20건을 발표하였다. 2023년도에는 국립대7곳, 사립대3곳이 지정되었으며 그 중 통합유형[7]이 4개였다. 특히 2024년에 지정된 글로컬대학은 이전과 달리 '연합'과 '초광역연합'이라는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였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로컬대학 혁신기획서를 보면 학사 구조 전환을 제안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무전공모집, 단과대통폐합과 학과제 폐지 등 모집 단계부터 벽허물기 시도가 대세를 이루었다. 복수전공이나 마이크로디그리(최소단위 교육과정)등 학사 다변화 시도도 있었다[8]. 글로컬대학30을 통해 대학들마다 자발적인 구조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두 정책의 연계를 통해 대학과 지방정부의 협력 강화로 대학은 지역사회 요구에 맞는 교육과 연구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지방대학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산업체와 기관에서 활약함으로써 지역의 인재가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과 지역의 산업체가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7) 부산대·부산교대(통합), 강원대·강원원주대(통합), 충북대·한국교통대(통합), 안동대·경북도립대(통합)
8) 월간중앙(2023.8) '교육부 글로컬대학 사업, 지방대 살릴 동아줄 되나'

V. 대학정책의 성공적 안착과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향

1. 윤석열 정부의 대학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

현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지역과 지방대학이 처한 사회적·경제적 특성과 맥락을 반영하였다. 지배구조면에서는 교육부의 절대적 권한을 분산하여 지방정부로 넘기고 지방정부와 재정지원을 공유하고자 한다. RISE체계와 글로컬대학30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정된 일부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두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RISE체계와 글로컬대학 30사업의 안정적 예산 지원과 집행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글로컬대학30 예산의 경우 2023년도에 국회에서 신규 예산이 아니며 2024년도 예산안에 사업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9]. 실제 2023년도 선정된 대학에 지원한 총 예산은 약 580억원으로 대학당 평균 41억원에 불과하며 교육부가 당초 공고에서 제시한 금액과 달랐다[10]. 예산 집행 시기를 조정하여 회계연도 시작 직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3년도에 지정 이후 12월 말이나 다음 해 1월에 집중되어 대학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집행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2024년 9월까지 지원 예산이 대학 측에 전달되지 않았다. 사업비 이월 허용 범위 확대나 간접비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대학의 자금 운용 융통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17개 시도에서 고등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이미 설치되어있으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고도화해야 한다. 현재 일부 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6개월에서 1년 과정의 고등교육 정책 전문 과정을 신설하거나 단기 해외 연구 프로그램을 확대,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한 상시 학습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학 간 정책협의체 운영이 내실화되어야 한다.

---

9) 한국대학신문(2023.11.8.) '국회 교육위 위원들, "글로컬대학30예산 편법 구성 교권 보호 증액 예산 30억원에 불과"비판'
10) 전북도민일보(2024.9.23.) '글로컬대학30 사업, 2년째 지체되는 늑장예산 지원.. 애닳는 대학들'

상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고 지역별 현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세션을 구성, 성과 공유와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연례 컨퍼런스 개최 등이 있다.

2.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고등교육 정책은 궁극적으로 대학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기능과 체제 개편, 대학 교육의 특성화, 대학 재정기반 강화, 거버넌스 개편 등의 필요성을 함께 주장한다.

첫째로 대학 기능과 체제 개편을 통해 연구중심대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의 주요 대학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학의 본질적 기능과 구조를 재정립해야 한다. 연구 인력과 자원 집중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히 첨단 연구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의 주요 명문 대학은 현재의 학부 중심 구조에서 대학원 중심 체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또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30년도에 대학입학연령인 18세 인구가 2021년 대비 약 35% 감소할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 주요 대학의 학부생 비율은(60%이상)은 세계 탑 대학들(30~40%)에 비해 배우 높은 수준이다[11]. 그래야 연구경쟁력 강화되고 교수1인당 학생 수 감소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부와 대학원의 연계 과정 확대를 통해 우수 학부생의 대학원 진학을 유도하고 감축된 학부 정원은 활용해서 학제간 연구를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다. 학부생을 감축한 대신 등록금 규제 완화를 통해 각 학교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장학금 확대를 통해 교육 기회에서 박탈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둘째로,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정기반이 필수적이다. 2020년 기준으로 GDP 대비 0.7% 수준인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더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0.9%)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많은 대학은 전체 수입 중 등록금(약40%)과 정부지원금(약30%)이 전체

11) 2023년 기준으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는 학부생 비율이 각각 60.1%, 64.7%, 61.8%이다. 한편 김진영(2022)에 따르면 하버드대학의 학부생 비율은 41%, 스탠포드대는 36%, MIT는 40%이다.

의 70% 가까이 차지한다. 전입 및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약12%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정부지원과 등록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에서 벗어나 산학협력, 기부금, 자산운용 등 다양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대학의 기부금 확대를 위해 기부 방식 다양화와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이 필요하고[12], 고액 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기부 문화 확산과 제도가 더 체계화되어야 한다. 대학의 수입 다변화 측면에서 산학협력을 통한 수익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고 또한 대학이 보유한 자산으로 수익화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김진영(2022)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의 지원 확대와 함께 대학 스스로 재정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셋째로 현재의 획일적인 평가방식 개선하고, 이를 통해 대학의 특성화와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 기존의 획일적 평가 방식으로 인해 대학의 서열화가 더욱 심해졌으며 대학의 자율적 운영과 혁신을 어렵게 했다. 대표적으로 대학평가에서 정량적 지표에 편중됨으로써 질적 측면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대학의 특성과 목표에 맞는 맞춤형 평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단순한 수치 비교를 넘어 교육의 질, 연구의 혁신성, 사회적 기여도 등 질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학들이 자신의 강점을 살리고 창의적인 교육과 연구를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Ⅵ. 나가는 글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지방대학의 역할은 지역 발전에 중요한 요소이다. 현 정부는 RISE와 글로컬대학30 정책을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

12) 한국대학신문(2021.5.13.) '기부금이 뭐길래...대학 기부금 유치에 전전긍긍'

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지원,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 강화, 그리고 관련 주체들 간의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더불어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체제 개편, 대학의 재정기반 강화, 그리고 평가체계의 개선을 통한 대학의 특성화와 다양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 대학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 및 지역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부. (2023).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물길을 만드는 글로컬대학〉

교육부. (2023). 〈First Mover, K-대학을 향한 담대한 혁신 글로컬대학 30 추진방안〉

교육부. (2024).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024년 기본계획〉

교육부. (2024).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 발표〉

국회예산정책처. (2023).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4). 〈지방대학 육성 정책 추진현황 및 과제〉. 나보포커스 제72호

산업연구원. (2017). 〈글로벌 저성장시대 새로운 산업정책 방향과 과제 –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2021). 〈뉴노멀 시대, 교육의 새로운 가치 탐색 연구: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23). 〈청년층의 지역간 이동에 관한 연구: 대학진학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23). 〈지역대학의 구조적 전환과 발전 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4). 2024년 고등교육 부문 관련 예산 현황 분석. 〈고등교육포커스〉 제9호.

고길곤·박세나. (2012). 국가경쟁력지수에 대한 비판적 검토 : IMD와 WEF의 국가경쟁력지수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0(3). 35-66.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권호혁·김종호·서석홍·이지웅. (2021).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대안. 〈지역사회연구〉, 29(4). 85-195. 한국지역사회학회.

김재훈. (2021). 지역간 불균형과 지방대학의 위기-중소도시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연구〉. 29(4). 1-30. 한국지역사회학회.

김진영. (2022). 미래의 고등교육을 위한 정부의 역할 및 투자방향.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의 개혁 세미나 발표자료.

김성현. (2024). 시스템사고로 본 교육부 감사가 대학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25(1). 115~137. 한국시스템나이내믹스학회.

서재영. (2024). 제22대 국회의 고등교육 입법과제. 〈교육비평〉 54. 46-77. 교육비평.

염민호. (2023). 대학구조개혁의 상수와 변수 :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의 의미. 〈대학:담론과쟁점〉. 11. 24~56. 한국대학학회.

이길재·조성은·김지선·박태양. (2021).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교육행정학연구〉. 39(4). 85-106. 한국교육행정학회.

이민철·김정학·조현구(2023). 대학평가와 대학선택: 대학소재지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5(2). 149~184. 한국정부학회.

장후은·이종호 (2017).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의 역할 제고 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3). 459-469. 한국지리학회.

채윤정. (2023).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학 정책의 전망과 과제 – RISE와 글로컬대학 30 정책 추진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4(9). 360-366. 한국산학기술학회.

최경희·임효숙. (2022). 시스템사고와 지역대학사례를 통해 본 대학평가의 한계와 발전방향.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23(3). 61-83.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Elsevier. (2024). *Quick guide to 7 major ranking reports*

IMD. (2024),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한국대학신문. (2021.5.13.) '기부금이 뭐길래...대학 기부금 유치에 전전긍긍'

월간중앙(2023.8) '교육부 글로컬대학 사업, 지방대 살릴 동아줄 되나'

한국대학신문. (2023.11.8.) '국회 교육위 위원들, "글로컬대학30예산 편법 구성 교권 보호 증액 예산 30억원에 불과"비판'

대학지성 in&out. (2024.5.8.).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내년 전국 시행...교육부, 준비 박차'

전북도민일보. (2024.9.23.) '글로컬대학30 사업, 2년째 지체되는 늑장예산 지원.. 애닳는 대학들'

대전일보. (2024.10.9.) “RISE, 글로컬에도 지역대학 한계여전… 지원 강화 필요”

타임즈: https://www.timeshighereducation.com

QS세계대학순위: https://www.topuniversities.com

US 뉴스&월드리포트:베스트대학순위: https://www.usnews.com

상하이랭킹: https://www.shanghairanking.com

〈부록 1〉 글로컬대학 비전 및 목표

【비전】 국가-지역-대학의 세계적 경쟁력 동반 상승

- **학과 간, 대학-지역·산업 간, 국내·외 간 벽 허물기**
- **대학-지자체-지역 산업계 탄탄한 파트너십 구축**
- **글로벌 수준의 대학-지역 동반 성장 모델 선도**

⇒ **이를 위한 마중물로서 글로컬대학 30교 내외 육성**

글로컬대학 :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

【대학외부】 지원 전략 혁신	【대학내부】 대학 구조·운영 혁신
1 "선택과 집중" 전략 대학 혁신 성공모델 창출 지원을 통한 대학 혁신의 방향 제시	1 산학·지역 협력의 중심(허브)화 지역과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연구·창업 등 추진
2 범부처·지자체간 장벽 없는 지원 혁신에 필요한 규제 특례, 범부처·지자체 재원 집중 지원	2 대학 내-외부의 벽 허물기 학외자의 대학운영 참여 확대 지역사회와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학사 운영 및 내부 체제 개편
3 수요자 관점의 대학혁신 지원 민간전문가(글로컬대학위원회) 주도로 계획 수립부터 지정·평가·지원 추진	3 대학 혁신 추진체계 운영 총장의 혁신 리더십 지원 지속가능한 혁신 추진체계 구축
4 지능형(스마트한) 지정 및 성과관리 대학이 부담 없는 지정·관리 방식,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성과관리	4 대학 성과의 투명한 공개 대학의 자율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한 성과 분석 및 대국민 공개

자료: 교육부(2023)

〈부록 2〉 지역별 글로컬대학 지정 현황

연번	지역	'24년 지정(10개)	'23년 지정(10개)
1	부산	동아대·동서대(연합)	부산대·부산교대(통합)
2	대구	경북대	-
3	울산	-	울산대
4	강원	-	강원대·강릉원주대(통합) 한림대
5	충북	-	충북대·한국교통대(통합)
6	충남	건양대	-
7	전북	원광대·원광보건대(통합)	전북대
8	전남	목포대	순천대
9	경북	한동대, 대구한의대	안동대·경북도립대(통합) 포항공대
10	경남	인제대 창원대·도립거창대·도립남해대·승강기대(통합)	경상국립대
11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연합)	

자료: 교육부(2024)